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7. 9. 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8월 24일 · 김성배 의원 외 9인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07. 9. 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 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김 성 배 의원)

가. 재정이유

- 종로구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의회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,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별도 장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)

- 의회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의회장의 위원회를 두되, 위원장은 의장, 부위원장은 부의장,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대표로 함(안 제3조)
-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, 약력보고, 조사, 육성녹음 근청,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거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- 의회장의 장의기간,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함(안 제7조)

다. 재정근거

-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건전가정의례준칙(제9조부터 제18조까지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 도 군)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없 음
- 5. 討 論 要 旨 : 없 음
- 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- 7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- 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